湛軒 洪大容의 社會身分觀과 身分制度 改革思想

愼　鏞　廈

一. 머리말
二. 華夷思想批判과 民族自主思想
三. 社會身分觀과 四民觀
四. 兩班身分 改革思想
五. 嫡庶差別 反對論
六. 農民層 生活安定論과 土地改革論
七. 寡婦再嫁 放任論
八. 人材敎育養成論과 適所配置論
九. 맺음말

一. 머 리 말

담헌 홍대용(1731～1783)은 18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탁월한 實學者였다. 홍대용의 實學思想의 업적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었으나, 특히 天文學·數學을 비롯한 自然科學 분야에서 동시대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구적이고 걸출한 업적을 내었다. 홍대용의 제자이며 동료인 燕巖 朴趾源(1737～1805)은 홍대용이 서양지식의 도래 이전에 이미 地球自轉說을 주장하는 등 자연과학 부문에서 획기적 사상을 가졌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德保(홍대용의 字)는 통달하고 민첩하며, 겸손하고 아담하며, 식견이 원대하고 이해가 정미하며, 더욱 律曆에 장기가 있어 渾儀같은 여러 기구를 만들었으며, 思慮가 깊고 汨篤하여, 남다른 獨創的 機智가 있었다. 서양 사람이 처음 地球에 대하여 논할 때 지구가 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는데, 德保는 일찌기 지구가 한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하여 그 학설이 묘미하고 玄奧하였다. 다만 저서하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 만년에 있어서는 더욱 지구가 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을 가졌으며, 이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1)

홍대용의 실학자로서의 업적이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종래 홍대용의 사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전적으로 그의 자연과학 사상에만 집중되어 왔다.(2) 그러나 홍대용의 학문과 사상에는 오늘날의 분류 개념

(1) 朴趾源, 「洪德保墓誌銘」, 『湛軒書』 附錄.
(2) ① 千寬宇, 「洪大容의 實學思想」, 『文理大學報』 제6권 제2호, 1958.

으로 볼 때 사회과학 분야에서 역시 탁월한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의 사회사상에 관한 연구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홍대용은 1731년(英祖 7년)에 양반신분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洪龍祚는 大司諫을 지냈으며, 아버지 洪檍은 牧使를 지냈다. 본관은 南陽이나, 그의 집안은 몇대에 걸쳐 벼슬을 하여 서울에서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字는 德保, 號는 湛軒 또는 洪之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渼湖 金元行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친교는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주로 北學派 실학자들인 朴趾源,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등과 깊었고, 생활에서는 李淞(호는 西林)과 친교가 깊었다. 홍대용은 그의 공부에 대해 스스로 「容은 십수세 때부터 古學에 뜻을 두어 章句·迂儒의 학문은 아니하기로 맹세하고 軍國經濟의 학문을 사모했으며 과거는 여러 번 보아도 합격되지 않았다.」[3] 고 쓴 바와 같이 매우 일찍이 實學에 눈을 떠서 이 부문의 공부를 했으며, 따라서 章句에 얽매이는 과거시험에는 끝내 합격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사촌 洪大應이 쓴 유사에는 홍대용이 栗谷 李珥(1536~1584) 및 磻溪 柳馨遠(1622~1673)의 저서와 학문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經世有用의 학문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어서, 홍대용이 율곡 이이와 반계 유형원을 계승한 실학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근세 儒者의 禮說의 繁文瑣節한 것이 도리어 制禮의 본의를 그르치고 箚錄의

② 千寬宇, 「洪大容의 地動說의 再檢討」,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③ 閔泳珪, 「十七世紀 李朝學人의 地動說」, 『東方學志』, 제16집, 1975.
④ 全相運, 「湛軒 洪大容의 科學思想」, 『李乙浩博士華甲紀念實學論叢』, 1975.
⑤ 小川晴久, 「18세기의 哲學과 科學의 사이 —洪大容과 三浦梅園—」, 『東方學志』 제20집, 1979.
⑥ 金漢植, 「湛軒의 政治思想에 나타난 個體性 論理」, 『韓國政治學會報』 제13집, 1979.
⑦ 趙珖, 「洪大容의 政治思想硏究」, 『民族文化硏究』 제14집, 1979.
⑧ 朴星來, 「洪大容의 科學思想」, 『韓國學報』, 제23집, 1981.
⑨ 金泰俊, 『洪大容과 그의 時代』(一志社), 1982.
⑩ 琴章泰, 「洪大容의 思想과 藝術觀」, 『韓國儒敎의 再照明』(展望社), 1982 참조.
⑪ 鄭聖哲(崔允珍·權仁燮·金哲央 譯), 『朝鮮實學思想の系譜』, 1982.
⑫ 유봉학,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제8집, 1982.
⑬ 金旼奎, 「洪大容思想에 관한 硏究」, 『弘益史學』, 제2집, 1985 참조.

(3) 『湛軒書』, 外集, 卷 1, 「與汝軒書」.

穿鑿附會한 것이 대부분 經傳本義에 어긋난 것을 항상 마음 아프게 여겼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서 가운데 『聖學輯要』와 『磻溪隨錄』을 經世有用의 學으로 삼으셨고, 杭州의 학자 嚴誠이 우리나라 유학자의 性理書를 구하매 선생은 『聖學輯要』를 증정하여 결국 嚴誠에게 그가 숭배하는 陸王의 學을 버리고 바른 학문에 돌아오게 하였다.」(4)

홍대용은 35세(1765년, 英祖 41년)때의 겨울에 숙부 洪檍이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청나라 수도 燕京에 가게 되자 그의 隨員으로 燕京에 가서 이듬해 봄까지 체류하였다. 홍대용은 연경에서 중국의 선비 嚴誠(호는 鐵橋), 潘庭均(호는 秋庫), 陸飛(호는 篠飮) 등과 친교를 맺고 경서 역사 풍속 등에 대하여 토론하며 견문을 넓혔다. 홍대용은 또한 天主堂에 가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문물을 견학했으며, 독일사람인 欽天監正 할러슈타인(Augustinus von Hallerstein: 劉松齡)과 副監 고가이슬(Antonius Gogeisl: 鮑友管)과 면담하여 서양의 자연과학에 대해 토론했고, 觀象臺를 견학하여 天文學에 대한 그의 지식을 더욱 넓혔다.

귀국 후 관직에 나아가 음직으로 繕工監監役, 敦寧府參奉, 世孫(후일의 正祖)翊衛司侍直, 通禮院引儀, 禮賓寺主簿, 司憲府監察, 儀賓府都事를 거쳐 宗親府典簿에 전직되었으며, 외직으로는 泰仁縣監, 永川郡守를 역임하였다. 홍대용은 그의 관직생활에 대하여 그의 친우 李淞에게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한다.

「서울 중앙의 작은 관직은 오직 공문서의 지시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소나 양같은 것을 기르고 희계나 맡도록 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옛날에 孔子도 이런 일을 하였지만', 이런 것이 비록 성인이 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기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外職으로' 오직 州와 縣을 맡는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볼 만한데 이것도 역시 상부 관청과 지방토호들이 방해하고 막아서 뜻을 펴볼 수 없으니, 혼자 애쓰면서 조심히 열쇠나 잘 보관하고 법률이나 지킬 따름이다. 그리고 나의 성품은 각색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겉으로 위엄을 부려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일은 잘 되지 아니하며, 오직 공평하고 청렴한 것으로 위엄을 낳게 하여 弛置해 버리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仕績이다.」(5)

홍대용의 위의 자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의 학문과 사상을 관직생활에서는 전혀 펴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鄭寅普에 의

(4) 洪大應(從父弟大應), 「從兄湛軒先生遺事」, 『湛軒書』, 附錄.
(5) 李淞, 「湛軒洪德保墓表」, 『湛軒書』, 附錄.

하여 그 문장이 古文의 典雅를 다한 훌륭한 글을 쓰는 숨은 큰 선비라고 높이 평가된 홍대용의 친우 李淞은 홍대용의 학문이 오로지 平實을 숭상하고 實行實用을 강조했다고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德保가 일찌기 나와 더불어 담론한 것과 그가 간직했던 마음, 그리고 그 소행 등을 다 진술할 수는 없으나 그 학문이 오로지 平實을 숭상하고 過越하고 矯激한 것이 없으며, 세속 선비들이 이론만 숭상하고 實行實用을 전연 방치함에 대해 일찍부터 憫歎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 고금 인물들의 正邪·是非를 논함에 그 抑揚取捨한 것은 前輩들의 定案 밖에 뛰어난 것들이 많았다. 그가 지닌 大心이야말로 공평하게 보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아량이었으니, 大道에 돌아가 뾰족하고 작고 좁고 사사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진실로 지금 세상에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며, 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에 이런 道가 보급되었으면 한다.」(6)

홍대용은 그의 학문적 뜻을 펴보지 못한채 53세(1783년, 正祖 7년)에 별세하였다.(7) 그의 저작들은 문집(또는 일종의 全書)으로서 『湛軒書』 15册으로 묶여져 전해오던 것을 洪命憙가 校하여 編을 약간 병합해서 1939년에 新朝鮮社에서 활자로 발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자연과학 사상을 제외하고 그의 사회사상 중에서 종래 밝혀지지 않았던 사회신분제 개혁사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홍대용은 社會身分觀이나 身分制度改革만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체계있게 다룬 논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저작들의 여러 곳에 단편적으로 서술된 사상들을 모아 그의 주장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

二. 華夷思想 批判과 民族自主思想

홍대용의 자연과학사상과 사회사상이 직접 연결되어 독자적 사회사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부분은 華夷思想에 대한 그의 철저한 비판과 民族自主思想 정립의 기초를 닦은 부분이다. 홍대용은 中國을 세계의 中心으로 보고 그밖

(6) 李淞, 「湛軒洪德保墓表」, 『湛軒書』, 附錄.

(7) 朴趾源, 「洪德保墓誌銘」, 『湛軒書』, 附錄에 의하면, 홍대용의 중국인 친우 嚴誠의 文集인 『鐵橋遺集』 중에는 嚴誠이 손수 그린 洪大容의 〈影幀〉이 있었는데, 이것은 嚴誠의 아들 嚴昻이 그의 부친 별세 후 洪大容을 伯父라고 호칭하면서 중국에서 간행하여 부친 것을 전전하다가 9년만에 洪大容이 받아보았다고 한다.

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을 오랑캐로 간주하는 華夷思想이 궁극적으로 자연과학(특히 天文學)에 있어서의 天圓地方說과 天動地靜說에 그 견고한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하고, 地球圓形說과 地球自轉說을 주장하면서 그의 자연과학 사상에 기초하여 종래의 華夷思想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분쇄하였다.

홍대용은 지구가 모난 것이 아니라 공과 같이 둥글고 하루 한 번씩 自轉하므로 中國만이 世界의 中心이 되고 正界가 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러시아(鄂羅)와 남쪽에 있는 캄보디아(眞臘)를 보면, 러시아는 자기나라를 正界로 삼고 캄보디아를 橫界로 삼는 반면에 캄보디아는 자기나라를 正界로 삼고 러시아를 橫界로 삼는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또한 中國과 西洋은 180도의 經度의 차이가 있는데, 중국사람은 중국을 正界로 삼고 서양을 倒界로 삼지만 서양사람은 서양을 正界로 삼고 중국을 倒界로 삼는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즉 홍대용의 논리에 의하면, 中國만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나 캄보디아나 서양이나 그리고 또 東國(朝鮮)이나 그 밖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正界가 되고 世界의 中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지금 中國에서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으로 북쪽에 鄂羅(러시아)가 있고 남쪽에 眞臘(캄보디아)이 있다. 악라의 天頂은 북쪽으로 北極과의 거리가 20度요 진랍의 天頂은 남쪽으로 南極과의 거리가 60도가 되며, 두 天頂의 相距는 90도가 되고 두 지역의 相距는 2만 2천 5백리가 된다. 그러므로 악라 사람은 악라로써 正界를 삼고 진랍으로써 橫界를 삼으며, 진랍사람은 진랍으로써 正界를 삼고 악라로써 橫界를 삼는다.
>
> 또 中國과 西洋의 經度는 차이가 180度나 된다. 중국사람은 중국으로써 正界를 삼고 西洋으로써 倒界를 삼는다. 반면에 서양사람은 西洋으로써 正界를 삼고 中으로써 倒界를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界를 따름이 모두 이와 같으니, 橫界도 없고 倒界도 없으며 다 같이 正界인 것이다.」(8)

홍대용은 모든 국가와 민족이 다 正界라고 보는 관점에서, 中國만이 〈華〉이고 〈內〉이며, 四圍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은 〈夷〉이고 〈外〉라는 華夷思想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중국사

(8)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람이나 다른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均是人也)이고, 君王은 중국의 君王이나 다른 어느 나라의 君王이나 다 같은 君王(均是君王也)이며, 나라는 중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나 다 같은 나라(均是邦國也)이고, 習俗은 중국의 습속이나 다른 어느 나라의 습속이나 다 같은 습속(均是習俗也)이다. 그에 의하면, 여기에는 內外의 구별이나 華夷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華와 夷는 다 같이 하나(華夷一也)인 것이다.

>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른 것으로서 血氣가 있는 것은 다 같이 사람(均是人也)이다. 무리에서 출중하고 풍채가 뛰어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자는 다 같이 君王(均是君王)이다. 문을 몇겹으로 설치하고 참호를 파서 강토를 지키는 것은 다 같이 나라(均是邦國也)이다. 章甫(殷代의 冠)도 委貌(周代의 冠)도 文身(東夷의 습속인 피부에 먹물 그리기)도 彫題(南蠻의 습속인 이마에 그림 새기기)도 다 같이 習俗(均是習俗也)이다.
>
> 하늘에서 이를 본다면 어찌 內外의 區別이 있겠는가. 이로써 각기는 그 사람을 친하고, 각기는 그 君王을 높이고, 각기는 그 나라를 지키고, 각기는 그 習俗을 편하게 여기니, 華와 夷는 하나(華夷一也)이다.」(9)

여기서 홍대용이 말한 「華와 夷는 하나이다(華夷一也)」라는 말은 「華와 夷는 平等하게 同一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홍대용의 이 사상 속에는 華夷思想을 철저히 분쇄하고, 民族들 사이의 均等, 君王들 사이의 均等, 國家들 사이의 均等, 文化(習俗)들 사이의 均等의 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전세계 모든 民族과 國家와 文化의 平等思想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홍대용의 이 사상 속에서는 中國과 다른 나라들(朝鮮 포함) 사이의 완전하고 철저한 평등이 확고하게 강조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홍대용이 中國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政治的 平等뿐만 아니라 習俗을 비롯한 文化的 平等까지 강조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홍대용이 文化的 相對主義의 평등사상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四夷)를 침략하는 것

(9)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天之所生 地之所養 凡有血氣 均是人也. 出類拔華 制治一方 均是君王也. 重門深濠 謹守封疆 均是邦國也. 章甫委貌 文身雕題 均是習俗也. 自天視之 豈有內外之分哉. 是以各親其人 各尊其君 各守其國 各安其俗 華夷一也.」

은 〈賊〉이라고 표현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은 〈寇〉라고 더 나쁘게 차별하는 것을 華夷思想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남의 강토에 대한 〈侵略〉은 모두 同一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四夷가 中國을 침략하는 것을 寇라 말하고, 中國이 四夷에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賊이라고 말해 왔는데, 남의 강토를 서로 침략하는 것은 그 義가 한가지로 같은 것이다.」(10)

홍대용의 이러한 사상 속에는 中國과 중국이 '오랑캐(夷)'라고 부른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정치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對等한 것으로 놓고, 자기 나라인 朝鮮도 중국과 대등한 中心性과 獨立性을 가졌음을 이해시켜 강조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홍대용은 華夷思想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성인이라고 하는 舜임금은 東夷사람이고 文王은 西夷사람이라고 중국인 친우들에게 설명하면서 華夷의 차별 사상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舜은 東夷의 사람이고 文王은 西夷의 사람이니, 王侯將相이 어찌 종자가 있겠는가. 진실로 天時를 잘 만들어 이 백성을 편안하게 잘 다스린다면, 이는 천하의 義王이다.」(11)

또한 홍대용은 華夷思想을 더욱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이 사상의 대표적 창시자의 하나인 孔子의 경우도 그가 중국에서 낳고 살았기 때문에 華夷思想을 담은 『春秋』를 썼지, 만일 그가 다른 나라에서 낳고 살았다면 그 나라 중심의 『域外春秋』를 썼을 것이라고, 孔子의 華夷思想부터 그 객관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였다.

「孔子는 周나라 사람이다. 王室이 날로 낮아지고 諸侯가 쇠약해지나 吳와 楚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하고 해치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春秋는 周나라 史記이니 內外를 엄격히 나눈 것이 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孔子가 바다를 건너 九夷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夏의 法으로 九夷의 風俗을 변화시키고 周나라 道를 域外에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內外의 구분과 尊攘의 의리에 마땅히 다른 『域外春秋』를 썼을 것이다. 이것이 孔子의 聖人된 까닭이다.」(12)

(10)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11) 『湛軒書』, 外集 卷 3, 「乾淨衕筆談(續)」.
(12)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홍대용의 이러한 사상을 朝鮮과 中國에 적용하면,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은 균등한 사람들이고, 조선의 國王과 중국의 皇帝(天子)는 균등한 君王이며, 조선의 國家나 중국의 국가는 균등한 國家이고, 조선의 習俗이나 중국의 습속은 각각 자기에게 편리한 균등한 習俗으로서, 朝鮮과 中國은 모든 부문에서 對等하고 均等한 것이다. 여기서 華夷思想은 극복되고 조선의 民族自主思想의 기초가 정립되는 것이다.

홍대용은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중국의 靑巖 朱璘이 쓴『明記輯略』이 壬辰倭亂 때의 李舜臣의 활동을 왜곡 격하시키는 등 사실과 달리 朝鮮歷史를 왜곡한 것을 낱낱이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의「明記輯略辨說」을 지어 그의 중국인 친우에게 보내서 왜곡된 조선역사를 바로잡도록 촉구하였다.(13) 홍대용은 이 논문에서, 임진왜란 시기에 倭軍이 곧바로 배를 몰아 중국의 山東半島에 상륙해서 중국을 공격하지 못한 것은 李舜臣이 그 요충을 장악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 학자들이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藩國에서의 일처럼 모독적으로 기술하여 公議를 만드는 것은「우리나라 역대의 원수(東方世讎)」(14)로 되어오고 있다고 중국인들의 조선역사 왜곡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홍대용은 중국인 친우에게 栗谷 李珥의『聖學輯要』를 보내면서 조선에는 대학자가 많음을 설명하고, 중국인도 이 책을 읽어 그 내용을 터득할 뿐 아니라 이를 板刻하여 간행해서 중국 안에 널리 流布시킬 것을 촉구하였다.(15) 홍대용은 우리나라가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학문이 찬란하여 볼만해서 經·禮·詩文을 저술해서 독자적인 文集을 이루어 만들어 낸 선비들이 수백명이나 됨을 자랑하면서 조선의 文化와 學問의 발전된 상태를 중국인 친우들에게 설명하였다.(16)

한편 홍대용은 국내의 지식인들에게 향해서는 조선의 선비들이 자기나라인 조선의 歷史와 文獻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中國의 역사와 문헌에만 매달리어 자기나라의 좋은 法(制度)과 아름다운 政治와 이름난 人物과 큰 學者를 연구하지 않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13)『湛軒書』, 外集 卷 1,「與秋庫書」의「明記輯略辨說」참조.
(14)『湛軒書』, 外集 卷 1,「與秋庫書」.
(15)『湛軒書』, 外集 卷 1,「與鐵橋書」참조.
(16)『湛軒書』, 外集 卷 1,「與鄭汝軒師閔書」참조.

「동방의 풍속이 儒學을 숭상하여 著述이 다양하나, 다만 선비들이 늙어 죽도록 일삼아 하는 것이라곤 오직 中國의 文獻에만 매달리고 東方의 歷史와 典故는 대개 빼어 놓고 講究하지 아니하여, 먼 것만 바라보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니 괴이한 일이다.

그러므로 新羅시대와 高麗시대는 고증할 만한 典籍이 없고, 특히 本朝 四百年 등안은 좋은 法과 아름다운 政治, 이름난 신하와 큰 선비가 어느 代에도 떨어지지 않았으나, 서적이 매우 적어 고증하기 어렵다.」(17)

홍대용은 여기서 당시 조선왕조의 일부 선비들이 중국에 대해 현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尊華主義的, 事大主義的 학문태도를 가진 것을 비판하고, 民族自主思想의 입장에 서서 자기나라의 歷史와 文化와 政法과 人物을 연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의 이러한 民族自主思想은 자기의 國土에 대한 애정으로도 표시되고 있다. 예컨대, 그는 중국인 친우들에게 조선의 국토에 대하여, 「三面이 바다에 연하여 魚鹽이 매우 풍족하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 많아 農桑의 業이 생겼으니 또한 바다 왼쪽의 하나의 樂土라 할 수 있다」(18)고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설명하면서 金剛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중 金剛山과 智異山과 漢拏山은 三神山이라 부르며 영이한 고적이 많고, 금강산은 그 가장 奇秀한 산이다. 중국인이 일찍이 시를 지어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서 한번 금강산을 봤으면 하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고 하였고, 본국인의 시에도 '은대궐은 새벽에 금열쇠로 열리고 푸른 하늘은 가을에 흰 부용을 묶었네(銀闕曉開金瑣鑰 瑤空秋束白芙蓉)'라고 하였다.」(19)

홍대용의 「燕記」 등에는 다른 北學派 실학자들과 비슷하게 중국 안에 보이는 先進文物에 대하여 찬탄하고 존숭하는 글귀들이 보이지만, 홍대용의 사회사상 그 자체에는 華夷思想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동시에 자기나라의 民族自主思想이 자연과학적 기초와 관련되면서 확고하게 정립되어 발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知的 분위기에서는 선진적 지식인의 획

(17) 『湛軒書』, 外集 卷 1, 「與秋庫書」.
(18) 『湛軒書』, 外集 卷 2, 「乾淨衕筆談」 15日條, 「但三面瀕海 魚鹽甚饒 土地多沃 農桑有業 亦可謂左海之一樂土也.」
(19) 『湛軒書』, 外集 卷 2, 「乾淨衕筆談」 15日條.

기적인 민족적 각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三. 社會身分觀과 四民觀

홍대용은 당시의 社會身分制度와 四民(士·農·工·商)制度를 일종의 〈習俗〉〈風俗〉으로 생각하였다.[20] 그는 社會身分制度와 四民制度를 구분하여, 사회신분제도는 〈名分〉으로 보았고 四民제도는 〈職分〉으로 구별하여 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홍대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名分으로서의 社會身分을 매우 중히 여기는데, 兩班身分들은 아무리 빈궁해도 일하지 않으며 農·工·商과 같이 간혹 實業에 힘써서 몸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웃고 奴隸처럼 무시하므로, 생산이 줄어들어 백성과 나라가 가난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名分을 중히 여겼다. 兩班들은 아무리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장끼고 편케 앉아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 간혹 實業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웃기를 奴隸처럼 無視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이 많아지고 生産하는 자는 줄어든다. 財物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21]

홍대용의 社會身分觀은 위의 글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신분을 〈名分〉으로 보고, 兩班身分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을 賤하게 보아 無視함으로써 生産을 정체시켜 나라와 백성을 貧窮하게 만드는 否定的 제도로 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社會身分에 대하여 처음부터 批判的 관점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홍대용은 社會身分뿐만 아니라, 身分 형성의 기원의 하나인 君王의 발생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勇猛과 智慧와 慈心을 가진 자가 마음을 같이한 자들을 이끌고 統治者(君長)가 되어 利權을 누렸고 疆土를 서로 차지하려고 戰爭을 되풀이한 반면에 약한 자들은 일만 수고롭게 하여 백성들은 제대로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支配者의 발생을 설명하였다.

---

(20) 『湛軒書』, 內集 卷 3, 「與人書二首」 참조.

(21) 『湛軒書』, 內集 卷 4 補遺, 「林下經綸」, 「我國素重名分 兩班之屬 雖顚連窮餓 拱手安坐 不執耒耜 或有務實勤業 躬甘卑賤者 群譏衆笑 視若奴隸 遊民多而生之者少矣. 財安得不窮 而民安得不貧也.」

「이에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욕심많은 자가 그 중간에 나서 제 마음과 같은 자들을 몰아 이끌고 각각 首長 노릇을 하게 되매, 弱한 자는 일만 수고로왔고 强者는 利權을 누렸다. 각각 나누어 점령한 疆土를 아울러 차지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내밀면서 육박하므로 백성이 제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巧한 자가 재주를 부려 殺氣를 도발시켰다. 쇠를 달구고 나무를 쪼개어 凶器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과 창, 혹독한 활과 화살로 城을 뺏고 땅을 다투매 쓰러진 시체가 들을 메웠다. 生民의 재앙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22)

홍대용은 國王 뿐만 아니라 貴族이란 것이 智略과 阿諂과 權謀와 私慾·利慾을 피하는 신분이라고 貴族身分의 행동양식을 매우 부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周나라 이후로 王道가 날로 없어지고 覇道가 횡행하여 거짓 仁한 자가 帝로 되고 兵力이 강한 자가 王이 되었으며, 智略을 쓰는 자가 貴하게 되고 阿諂을 잘한 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王이 臣下를 부림에 괴임과 극으로 꾀이고 신하가 왕을 섬김에는 權謀를 미끼로 하였다. 이리하여 얼굴을 반쯤 알아도 마음이 맞게 되고 남모르는 식견으로 걱정을 예방하는 바, 上下가 서로 다투어 私慾만 꾀하였다. 아아, 슬프다. 천하가 번잡하게 됨은 利慾을 품고 서로 대한 때문이었다.」(23)

홍대용은 인류사회에서의 貴族社會의 발생과정과 조선의 社會身分制度를 모두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관찰한 것이었다.

반면에 홍대용은 士·農·工·商의 四民制度는 〈職分〉으로 보아 生産的인 것이며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에 대해서는 官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비록 농부나 장사치의 자식이 廊廟에 들어가 앉더라도 참람스러울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公卿의 자식이 하인(輿儓)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위와 아래가 힘을 다하여 함께 그 職分을 닦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상고하여 賞罰을 베풀어야 한다.」(24)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홍대용이 四民制度는 〈職分〉이기

(22)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23)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毉山問答」.
(24)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當嚴立科條 其不系四民 而遊衣遊食者 官有常刑 爲世大戮. 有才有學則 農賈之子 坐於廊廟 而不以爲僭 無才無學則 公卿之子 歸於輿儓 而不以爲恨. 上下戮力 共修其職 考其勤慢 明施賞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위와 아래가 힘을 다하여 그 職分을 닦는다」는 곳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홍대용은 四民平等을 주장하지 않고 종래의 四民의 位階的 序列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홍대용의 위의 社會身分觀과 四民觀을 합해 보면, 주목해야 할 그의 사상이 떠오른다. 즉 그는 社會身分制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서 四民制度로 대체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勤勞를 賤視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 생산을 정체시키고 경제를 빈궁케 하는 社會身分制度〔兩班(士族)·中人·良人·賤人의 차별제도〕를 해체시켜서, 위와 아래가 그 나뉜 職分을 다하는 데 힘쓰는 位階的 四民制度(士·農·工·商의 분업제도)로 대체하는 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사회신분제도에도 士族兩班이 지배층이고 사민제도에서도 士가 최상위층에 있는 경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내용의 변혁이 없으면 공허한 論戱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홍대용이 여기서 주장한 것이 바로 〈身分의 世襲制度의 廢止〉였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農夫·商人의 자식일지라도 議政府(廊廟, 公卿이 됨을 의미)에 들어가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고,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最高位兩班士族인 公卿의 자식이라도 하인의 직책을 맡겨야 한다는 홍대용의 주장은 社會身分의 世襲制의 廢止를 매우 강도높게 주장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사회신분제도는 세습성을 그 특징의 골간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世襲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신분제도는 거의 해체되는 것이다. 홍대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位階的 四民制度의 경우에 士의 신분적 성격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세습제도가 폐지되면 그것은 當代(一代)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四民制度는 점차 職能의 分業으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은 士·農·工·商의 직업의 배분 기준을 〈才能과 學識〉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能力〉 본위의 직업 배분을 주장한 것으로서, 신분의 세습성 폐지의 주장과 함께 홍대용의 획기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의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능과 학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홍대용은 四民制度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교육을 거쳐 四民의 適所에 배치하여 職業을 갖고 일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으며, 四民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고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벌주고 鄕黨에서도 내쳐야 한다」(25)고 강조하였다.

홍대용은 그의 이러한 社會身分制度의 폐지와 四民制度로의 대체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 제도를 固定不變한 것으로 보아 改廢를 불가하다고 보는 견해에도 반대했고, 동시에 전후좌우를 돌아봄이 없이 일거에 즉각 革命的으로 폐지하는 견해에도 반대하였다. 그는 사회신분제도가 점차 해체되어 가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사회신분제도를 固定·不變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는 「옛적과 지금은 시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三王이 禮가 같지 않았던 것이오, 지금 세상에서 옛 道를 행하고자 하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26)라고 지적하고, 便宜에 따르며 風俗에 맞추어 變動을 받아들일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周公의 제도는 周나라의 便宜에 따른 것이고 朱子의 禮는 宋나라의 風俗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便宜에 따르고 風俗에 맞추어서 줄이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는 것이니, 定한 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때문에 행해도 무방하고 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옆에 두세가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두세가지의 가볍고도 작은 것을 가지고 變易할 수 없는 大典을 만든 다음 악착스럽게 조금도 어김없이 이것으로써 禮를 삼는다면 그 융통성 없이 억매인 것이 혹 林放에게 비웃음을 면하지 못할까 나는 두렵게 여기는 바이다.」(27)

또한 홍대용은 變革은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 알맞게 좌우를 고려한 改革的 방법을 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時代의 潮流에 따라 알맞게 한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두 적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성인이 마련한 禮를 후세 임금이 본받듯이 그 높은 책임을 몸소 맡을 수 있을 것이다.」(28)

홍대용은 身分世襲制를 廢止하여 폐해 많은 〈名分〉으로서의 社會身分制度를 해체시키고 〈職分〉으로서의 四民制度로 대체하는 변혁을 改革的 방법으

(25)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其遊衣遊食 不事行業者 君長罰之 鄕黨棄之.」
(26) 『湛軒書』, 內集 卷 3, 「與人書二首」
(27) 『湛軒書』, 內集 卷 3, 「與人書二首」
(28) 『湛軒書』, 內集 卷 3, 「與人書二首」

로 실현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四. 兩班身分 改革思想

홍대용은 그의 시대의 사회신분들〔兩班(士族)·中人·良人·賤人〕 중에서 가장 폐해가 많은 것을 兩班身分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홍대용은 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을 남기지는 않았고, 여러 글들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 폐단과 개혁을 언급하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의 이 단편적 언급들 중에서 중요한 개혁의 주장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홍대용은 兩班身分의 世襲制의 廢止를 주장하였다.(29) 그는 양반신분제를 뒷받침하는 朱子學에 조차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다.(30) 이미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公卿의 자식이 輿儓(하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31)고 한 그의 문장 속에는 양반신분의 世襲制 廢止의 주장이 매우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습제는 양반신분의 가장 중요한 特權이고 특징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양반신분은 근본적으로 개혁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홍대용은 無爲徒食하는 양반의 처벌과 도태를 주장하였다.(32) 그는 학식과 재주에 따라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일하는 직업을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兩班身分들이 예외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자는 나라에서 罰주고 鄕黨에서 버려야 한다」(33)고 거듭 주장하였다.

홍대용의 주장과 같이 無爲徒食하는 양반들을 처벌하고 도태시키면, 당시의 양반들 중에서 오직 實力있고 實職있는 양반들만 〈士〉로 남고, 대부분의 기존양반들이 본래의 〈身分〉에서 淘汰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직책과 실

(29)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30) 『湛軒書』, 內集 卷 3, 「與人書二首」
(31)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32)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33)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력이 있는 〈士〉도 當代에만 그 身分이 유지되므로 兩班身分은 크게 개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홍대용은 양반들이 實學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虛學과 詞章이나 힘쓰며 科宦에만 관심을 갖는 폐단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實學에 힘쓰도록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천하의 英才가 적지 않은 것이지만, 오직 科宦이 속박하고 物欲이 가로막고 安逸이 해독을 주어, 이로 말미암아 능히 초연하게 탈출하여 옛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게 되고, 詞章이 풍미하며 記誦이 과장하고 訓詁가 구애하여, 이로 말미암아 능히 實學에 힘쓰는 사람이 적으며, 功利가 그 학술을 혼란시키고 老佛이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陸王이 그 진실을 어지럽히어, 이로 말미암아 능히 탁연하게 正學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더욱 적은 것이다.」(34)

네째, 홍대용은 양반신분의 奢侈와 浪費의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35) 홍대용은 양반신분의 당시 성행하던 사치와 낭비가 은근히 궁궐의 사치와 낭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양반들과 전국민의 사치와 낭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궁궐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가정이건 국가이건 사치함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무릇 第宅과 器用에 대해서 오직 튼튼하고 깨끗함에만 힘써서, 쓰는 데에 알맞도록 하고, 재물만 浪費할 뿐, 쓰는 데에 유익이 없는 것은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宮闕을 金銀으로 장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집에서 山藻를 그리지 못할 것이며, 妃嬪이 수놓은 의복을 입지 않는 한 士庶人의 아내가 감히 명주옷을 입지 못할 것이다. 몸소 실천한 뒤에 영을 내리고 자신부터 다스린 후에 법을 가르친다면 백성치고 누구인들 따르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36)

다섯째, 홍대용은 양반신분의 過飮과 無節制를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다.(37) 그는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 鄕校에 나온 鄕班들이 享祀를 빙자하여 酒肉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금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유하였다.

「대저 먹는 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선비의 疏節이라 하였거니와, 孔子께서 삼가던 바는 오직 齋戒로 우선하였다. 소절도 삼가지 않고 성인의 훈계도 어

(34) 『湛軒書』, 外集 卷 1, 「與鐵橋書」
(35) 『湛軒書』, 內集 補遺 卷 3, 「諭鄕校」 참조.
(36)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37) 『湛軒書』, 內集 補遺 卷 3, 「諭鄕校」 참조.

기니 士族의 風習이 한심하다. 이제 듣건대, '향교에 享祀를 치르러 들어와 재계하는 데 校任은 반드시 酒肉을 많이 준비하여 여러 선비를 공궤하는데, 탁주는 버리고 청주만 마시며, 종일토록 취해야 하고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여 주면 칭찬하고 그렇지 못하면 헐뜯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다'한다.……술마심은 재계함에 있어 금물이요, 향사란 斯文의 중대사다. 衣冠을 정결히 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멀리하며, 마음껏 정성을 다하고 진퇴를 엄숙히 하고서도 오히려 공경을 다 못할까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정신없이 술을 마셔 온종일 취해 있다면 제사 받드는 날 저녁에 마음이 어찌 계신듯 하겠으며 성현의 신령인들 어찌 강림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향사치르는 자리는 변해서 술마시는 장소로 되고 많은 선비들의 모임은 다만 마냥 醉飽하려는 마당이 될 터이다.…… 이제부터는 舊習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아침 저녁 粥飯 이외에 딴 술자리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38)

여섯째, 홍대용은 양반신분의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두 그가 개혁하려고 구상하는 학교에 보내어 실제사업에 쓸모있는 인재로의 교육을 받도록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39) 이 개혁사상은 다른 신분을 포함한 국민일반의 교육과 인재양성에 중첩된 것이므로 장을 나누어 좀 더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일곱째, 홍대용은 양반신분의 鄕約을 권장하여 풍속을 敎化하고자 하였다. 그는 향리에 살 때 실제로 鄕約을 설치하여 勸善懲惡의 방법으로 삼고 또 里倉을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의 冠婚喪祭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어 한 고을 사람들이 감복한 일이 있었다.(40) 그는 향약을 사례로 실시하면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 정치를 실시하지 않고 法道와 禮儀를 먼저 가르치는 제도를 실시하려는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면서도 鄕約의 시행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런데 田地를 分配하고 財產을 제정하는 政事를 능히 베풀지 않고 法道와 禮儀를 가르침을 우선으로 한다면 누구인들 그 오활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는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법이 없는 것은 근심하지 말고 정성껏 행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할 것이다. 무릇 이 鄕約에 입회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規約을 지켜,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君子에게는 곤궁함을 잘 견디어 범람한 짓을 못하게 하고 小人에게는 위엄

(38)『湛軒書』, 內集 補遺 卷 3, 「諭鄕校」
(39)『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40) 洪大應(從父弟大應), 「從兄湛軒先生遺事」, 『湛軒書』 附錄.

을 두려워해서 허물이 적도록 하면 반드시 風俗의 敎化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후일 王政을 행할 때에 또한 이것이 법으로 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41)

요컨대 홍대용의 양반신분 개혁사상은 양반신분의 世襲制를 廢止하여 양반(士族)을 當代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대(양반의 자제들)부터는 재능과 학식에 따라 나라에 유익한 직업을 갖도록 하며, 無爲徒食하는 양반들은 모두 罰하고 淘汰시켜서 農·工·商에 종사하도록 하여 오직 實學과 實力과 實職이 있는 〈士〉만을 남겨놓는 대개혁을 구상한 것이었다. 홍대용은 이 〈士〉들을 士·農·工·商의 四民制度의 본래의 士로 생각했으며, 이들은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고 과음과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않으며, 實學의 敎育에 힘쓰는 계층이 될 것을 구상했고, 이를 위해 鄕約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제도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五. 嫡庶差別 反對論

홍대용의 시대에는 嫡子와 庶子의 差別이 전사회적으로 극심했으며,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庶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庶子는 科擧應試도 금지당했으며, 家門의 宗統도 계승시키지 않고 庶長子가 있어도 養子를 들이어 家統을 계승하게 하였다. 홍대용은 이러한 嫡庶差別制度에 反對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우에는 嫡庶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딴 형제가 없으므로 동기간의 정의에는 嫡庶를 구별하지 않는다. 비록 과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드러운 말씨로 가르치고 경계하며, 너무 꾸짖고 노여워함으로서 원한을 머금거나 화목을 잃거나 해서는 아니된다.」(42)

그러나 홍대용의 嫡庶差別反對論은 嫡庶差別의 廢止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며, 오직 그 인간주의적인 同情과 차별의 緩和를 주장하는 수준에서 멈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1) 『湛軒書』, 內集 卷 3, 「鄕約序」
(42) 『湛軒書』, 內集 卷 3, 「自警說」

「지금 京鄕에 퍼져있는 嫡庶諸族이 가난하고 미천해서 능히 생활할 수 없는 자가 많다. 마땅히 힘이 미치는 바에 따라 사랑하고 구휼하여 멸치도록 하고 婚姻과 初喪에 대해서도 마음껏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어리석은 이는 불쌍히 여기고, 착한 이는 아름답게 생각하여 몸과 이름을 보전하고 나쁜 짓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저 모든 宗族들이 비록 멀고 가까움의 차별이 있고 은혜와 의리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애당초의 生은 뿌리를 같이하고 몸은 한 體를 나눈 것이다.」(43)

홍대용의 위의 글은 그의 宗族의 경우를 빌린 것이지만, 여기서도 홍대용의 嫡庶差別反對論이 적서차별의 廢止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적서차별의 緩和論을 설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六. 農民層 生活安定論과 土地改革論

홍대용은 농민과 농업을 매우 중시하고 농민층의 생활상태의 안정과 개선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안을 구상하였다. 그의 저작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농민층에 대한 그의 개혁사상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홍대용은 당시 사적 지주들에 의한 토지겸병 및 지주제도의 만연과 농민의 다수의 토지 상실의 조건 속에서 土地改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44) 그는 향약을 권장할 때에도 그에 앞서 土地改革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田地를 分配하고 재산을 제정하는 정치를 능히 베풀지 않고 법도와 예의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한다면 누구인들 그 오활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는가」(45)라고 하여 농촌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 土地改革임을 강조하였다.

홍대용이 구상한 土地改革의 원리는 〈井田制〉였다. 그가 「후세에 井田法을 부활시키지 아니하면 王道는 결국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다」(46)라고 한 곳에서도 그가 井田制를 가장 이상적 토지제도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43) 『湛軒書』, 內集 卷 3, 「自警說」

(44)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45) 『湛軒書』, 內集 卷 3, 「鄕約序」의 「不能施 分田制產之政 而先生 以法度禮義之敎者 人孰不笑 其迂哉.」

(46) 洪大應(從父弟大應), 「從兄湛軒先生遺事」, 『湛軒書』 附錄.

홍대용은 실제의 土地改革案에서는 農民家族(남자와 그 부인 등 부부가족 이상의 가구) 1가구당 〈土地 2結의 均等分配〉를 주장하였다.

「아홉 道의 토지를 均田해서, (지세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내가 있는 남자 이상에 대하여 각각 2結을 받도록 한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限하고 그가 죽으면 3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 수여한다.) 田園 울타리 밑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도록 하고, 심지 않은 자에게는 벌로 布(베)를 받는데 여자가 3명이면 布 1필, 여자가 5명이면 帛(명주) 1필을 常例로 한다. (15세 이상부터 해당시키고 50세가 되면 바치지 않는다.)」(47)

홍대용의 토지개혁 구상을 보면, 토지는 모두 井田制(9區)의 원리에 의거하여 均等하게 나누어서 1區를 2結로 하여 농민가족 1가구당 2結씩을 均等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地形上 井田을 문자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井田制이지만 실제 내용은 均田制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민가족의 토지분배받은 남자가 죽으면 3년 후에 그 후계 남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 토지를 移授한다고 한 것은 홍대용이 전국의 토지가 〈王土〉라고 하는 〈王土개념〉 또는 〈公田개념〉을 배경으로 하여 〈地主制度〉를 철저히 폐지하려고 한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당시 만연된 私的 地主制度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민가족 1가구당 2結씩의 土地를 均等分配하는 土地改革을 실시하여 농민층을 私的 地主의 賭租(소작료) 착취로부터 보호해서 농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厚生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홍대용은 당시 田稅와 賦役과 貢納 등 농민들의 부담이 매우 過重한 조건 속에서 田稅를 총생산량의 10분의 1(什而取一)로 절감시킬 것을 구상하였다.(48) 이것은 농민부담의 획기적인 輕減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田稅가 경감되는 경우의 國家財政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田稅(총생산량의 10분의 1)와 벌로 받아들인 布 중에서 10분의 1만 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10분의 9는 국왕(중앙정부)에 바치도록 할 것을 구상했으며, 왕실의 낭비를 조장하고 농민착취를 자행하던 內需司와 宮房田(宮結)

(47)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均九道之田 什而取一 男子有室以上 各受二結 (限其身死則 三年之後 移授他人). 園圃墻下 樹以桑麻 不毛者 罰以布 常征三婦布一疋 五婦帛一疋(取十五歲以上 五十則不征).」

(48)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은 혁파하여 戶曹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布와 곡식으로 납부하는 부세는 10분의 1만 사용하고 (10분의) 9는 나라에 바친다. 任은 長에게, 長은 監에게 바치는데 다른 것도 이와 같다. 內需司와 宮結을 革罷하여 戶部에 속하게 한다.」(49)

세째, 홍대용은 농민층의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두 그가 개혁하려고 구상하는 학교에 보내어 실제에 쓸모있는 교육을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50) 이것은 농민층에게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농민층으로부터 인재를 육성하고 발탁하여 나라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혁사상은 다른 신분을 포함한 국민일반의 교육과 인재양성에 중첩된 것이므로 장을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네째, 홍대용은 종래 農民層은 정치에 대한 諫言과 의견제출에서 배제되어 있고 兩班官僚와 양반선비들만이 이를 독점하고 있던 조건 속에서 農民層까지 전국민이 모두 諫言과 所懷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1) 그는 이를 위해서 諫官制度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개혁 주장은 당시 최저변의 農民層의 의사와 의견을 국왕에게 소통시키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후세에 諫官이라는 제도는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지 六卿의 소속이 각각 맡은 바가 있어 한 번 호령으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10여 명의 듣고 본 것으로는 두루 다 알기가 어렵다. 郎吏와 牧守는 직접 목격하여 잘못된 결정에 분개해 말하고 싶으나 越權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니, 이것은 관직 설치한 뜻은 비록 좋으나 諫言을 오게 하는 길은 좁다. 마땅히 兩司를 혁파하여 위로 公卿으로부터 아래 胥隷에까지, 가까운데는 宦寺로부터 먼데는 農畝까지 각각 맡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 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도록 하여야 한다.」(52)

다섯째, 홍대용은 당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고서도 大小人을 막론하고 安逸에 빠져서 國防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을 매우 걱정하여 개탄하고,(53) 〈兵農一致制〉를 채택하여 農民層에게 軍事訓練을 시켜서 外侵의 만일의 경우에 農民層의 궁극적 힘을 장수들과 함께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구

(49)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50)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51)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52)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53) 『湛軒書』, 內集 卷 3, 「勸武事目序」 참조.

상하였다.(54) 홍대용은 兵農一致를 실시해야 할 근거로서 미리 武事에 힘써 준비해 두어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武事란 백년토록 쓰지 않는 것은 가하나 하루라도 講習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戰亂시기에 講習하면 外寇를 막고 王室을 호위할 수 있으며, 平和시대에 講習하면 奸人들의 넘겨봄을 끊고 禍亂의 싹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도 남의 軍事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兵家에서 이른바 '좋은 중에 가장 좋다'는 것이다.」(55)

홍대용은 兵農一致制를 실시하여 農民層에게 매년 봄부터 여가에 軍事訓練을 시키며, 가을에는 군사를 點考하고, 개인 혹은 단체별로 武術試合을 벌이어 상·벌을 내리며, 들과 성 안에서 訓練을 되풀이 강화하고, 武器를 수리하며 군사를 장려해서 항상 警報가 내린듯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험한 요새지를 택해서 治所로 하는데 城은 높이 쌓고 도랑은 깊이 판다. 仲春이 되면 農幕에 나가 살아 남자는 농사에 힘쓰고 여자는 누에치기에 부지런히 하는데, 여가 날에는 효도와 공경하는 도리를 강론하고, 치고 찌르는 軍事訓練도 講習한다. 서리가 이미 내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 소와 말에 싣고 모두 城 안으로 모여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수입을 따져서 지출한다. 50세가 된 다음이라야 명주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유있는 糧食은 저축하여 水災와 旱災에 대비하고, 軍事를 點考하며 技藝(兵術)를 뽑는데 賞罰을 받게 하되, 個別로 그 才能을 시험하든가 團體로 그 陣法을 鍊習하며, 城에서 訓鍊을 하기도 하고 들에서도 鍊習하여 兵器를 수리하고 軍事를 장려하는데 항상 警報가 내린듯이 하여야 한다.」(56)

여섯째, 홍대용은 農民層의 厚生의 증대 뿐만 아니라 土地分配와 농민층의 安定을 강조하고 특히 兵農一致制에 의한 國防을 중시했기 때문에 農民들의 居住移動의 許可制를 주장하게 되었다.

「대개 백성들은 각각 田里를 지켜서 죽어 장사를 지낸다든가 혹은 移徙를 함에 있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官에 보고하여 認可狀을 받은 다음 그의 本籍을 없앤다. 移徙가는 곳에서는 즉시 官에 보고하여 入籍시키고 田土를 받는다. 官에 보고도 않고 제마음대로 移徙하는 자는 벌을 준 다음 그가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며, 官에서 認可狀도 없

(54)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참조.
(55) 『湛軒書』, 內集 卷 3, 「勸武事目序」
(56)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이 移徙를 허가한 자는 그 面任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57)

홍대용이 이와같이 농민들의 거주이동에 官의 許可制를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農民들을 土地와 農村에 緊縛시키는 정책이 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사람이 8세가 되는 즉시 그 이름을 팔뚝에 검은 글짜로 새긴다면 戶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간사한 백성이 그 이름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58)라고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文身戶牌法의 실시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홍대용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 그의 농민층 생활안정론 등의 개혁사상이 近代的인 것이거나 近代를 志向한 것이 아니라 封建國家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전근대적 범주의 개혁사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용의 土地改革, 田稅의 결감, 농민층 자제들에 대한 敎育의 실시, 농민층에게의 言路의 확대, 새로운 兵農一致의 구상 등은 실시되기만 한다면 객관적으로 농민층에 대한 地主와 兩班官僚들의 착취를 배제하여 農民層의 厚生을 크게 증대시키고 조선왕조 국가와 농촌사회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進步的인 改革思想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七. 寡婦再嫁 放任論

홍대용의 시대의 조선왕조사회에서는 寡婦再嫁가 사회관습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법률적으로도 再嫁女의 자식은 科擧응시자격이 박탈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특히 兩班身分層에서는 가문내에 소녀나 다름없는 10대의 청상과부가 생겨도 再嫁를 엄금하였고, 만일 再嫁를 하는 경우에는 마치 兩班身分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이를 禁忌하였다.(59) 이것은 당시 社會身分制度와 관련하여 女性을 극도로 抑壓하던 제도의 하나였다.

홍대용은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인 친우들과 토론하면서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寡婦再嫁를 「반드시 禁止하지도 말고 또 반드시 勸하지도 말고 맡길 수 밖에 없다」(60)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寡婦再嫁放任論〉이라

(57)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58)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59) 本相佰,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대한 硏究」『韓國文化史硏究論攷』, 1947, 참조.
(60) 『湛軒書』, 外集 卷 2, 「乾淨衕筆談」, 「余曰 不必禁之 亦不必勸之 任之而已」

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홍대용의 독특한 제안이었다.

당시의 사회관습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홍대용의 이러한 寡婦再嫁放任論은 과부재가를 사실상 許容해 주는 내용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進步的 성격을 가진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八. 人材敎育養成論과 適所配置論

홍대용은 〈名分〉으로서의 社會身分制를 폐지하고 〈職分〉으로서의 四民制度를 이에 대치시키고자 하면서 士·農·工·商에의 국민의 職分 배치와 관련하여 전국민의 능력과 학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敎育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수도 서울의 9部와 지방에는 道로부터 최말단 행정단위인 面에까지 모두 學校를 설치하고 각각 敎官(敎師)을 둘 것을 구상하였다. 최말단 행정단위인 面에는 〈齋〉라는 初級學校를 설치하고 校長을 두어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두 모아서 가르치고, 교육과목은 〈孝〉〈悌〉〈忠〉〈信〉의 道를 가르치는 내용과 〈활쏘기〉〈말타기〉〈글씨쓰기〉〈셈하기〉의 技術學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홍대용이 구상한 〈齋〉 초급학교 교육은 전국민의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홍대용의 이 사상 속에는 義務敎育思想의 맹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안으로 王都의 9部와 밖으로 道에서 面까지 모두 學校를 설치하고 각각 敎官을 두는데, 面에는 각각 齋가 있고 반드시 長이 있다. (연령과 덕이 높아 師表가 될만한 자이다.) 面內에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는데 孝·悌·忠·信의 道와 射擊·騎馬·書·算 등의 技藝로써 연습시킨다.」(61)

홍대용에 의하면, 〈齋〉 초급학교에서의 교육 결과 才行이 뛰어나서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의 상급 행정단위인 司로 보낸다. 司에 설치된 學校(중급학교,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음)에서는 각 面에서 뽑아 보낸 才行이 뛰어난 학생들을 敎官이 모아서 교육한 다음 또 그중에서 優秀한 자를 다시 뽑아 수도 서울에 있는 大學에 보내는 것이다.

---

(61)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內而王都九部 外而自道以至於面 皆設學校 各置敎官 面各有齋 齋必有長(取年高德邵 可爲師表者). 面中子弟八歲以上 咸聚而敎之 申之以孝弟忠信之道 習之以射御書數之藝.」

홍대용에 의하면, 大學에서는 司徒가 관장하여 전국 각 지방에서 뽑혀 올라온 優秀한 人材들을 敎育하는데, 그들의 言行을 관찰하고 學識과 才能을 시험하여 매년 正月에 그 중 優秀하고 賢能한 자를 다시 뽑아 조정에 推薦해서 官職을 주고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홍대용은 기존의 官吏중에서도 시험을 보이어 才能은 높은데 官職이 낮은 자는 차례대로 陞級시키고 재능이 없는 자는 물리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 才行이 뛰어나 쓸 만한 자가 있으면 司로 보낸다. 司에서는 敎官이 모아 교육하는데 그 중 우수한 자를 차례로 뽑아 大學으로 보낸다. 大學에서는 司徒가 관장하여 교육하는데, 그 言行을 관찰하고 學識과 才能을 시험하여 매년 정월에 그 중 賢明한자와 能力있는 자를 朝庭에 推薦해서 官職을 除授하여 책임을 맡긴다. 재주는 높은데 官職이 낮은 자는 차례대로 陞級시키고 능치 못한 자는 물리친다.」(62)

홍대용의 이러한 인재교육양성 구상에 의하면, 士·農·工·商에 종사하는 전국민의 자제가 8세 이상이 되면 面단위의 〈齋〉 초급학교에 전원 입학하여 마치 오늘날의 의무교육처럼 초등교육을 받은 다음, 그 중에서 가장 優秀한 자제들을 뽑아 司의 學校(중급학교)에서 다시 중등교육을 받고, 여기서 다시 가장 優秀한 人材들을 뽑아 서울의 大學에 보내어서 敎育을 시켜 다시 優秀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므로, 전국민이 기초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人材는 고등교육인 大學敎育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교육시키고 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大學에서의 교육의 결과 學識과 才能과 言行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조정에 〈推薦〉해서 官職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홍대용의 개혁구상에 의하면, 조정의 官僚를 선발하기 위한 科擧制度는 大學敎育을 통한 〈推薦制度〉로 대체되고, 동시에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주로 私個人에 맡겨졌던 과거시험준비 공부가 各級의 學校敎育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학교교육의 교육내용이 孝·悌·忠·信의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전의 공부와 큰 다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다시 〈射擊(활쏘기)〉과 〈騎馬(말타기)〉의 兵術訓練과 〈書〉·

(62)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其茂才卓行 可以需時適用者 貢之於司 司之敎官 聚而敎之 擧其最而 以次升之 至于大學 大學之敎 司徒掌之 聽其言 觀其行 考其講 而試其才 每於歲首 擧其賢者能者於朝 授之以職 而責其任. 才高以官卑者 以次而陞之 其不能者斥之.」

〈算〉으로 대표되는 技術學을 교육하는 것은 〈實學〉을 교육하도록 하는 획기적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대용은 각급학교에서 교육받은 人材들은 適材適所에 配置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뜨리고 버릴 사람이 없는 有用한 인재들임을 강조하고 人材의 適材適所配置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개 人品에는 高下가 있고 재주에는 長短이 있으므로 단점을 버리고 長點을 취하여 쓰면 이 사회에 쓰지 못할 재주란 전혀 있지 않는 것이다. 面의 〈齋〉 초급학교 등 학교교육에서 優秀한 사람은 결국 조정에 천거하여 官僚(士)가 되도록 하고, 자질이 떨어진 사람은 野에서 쓰도록 하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工〉에, 利에 밝고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商〉에, 꾀가 있고 용맹이 있는 사람은 〈武職〉에, 소경은 점치는 데에, 宮刑을 받은 사람은 문지기에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인재를 適材適所에 배치하고, 심지어 벙어리·귀머거리·앉은뱅이까지도 모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배치할 것을 홍대용은 주장하였다. 그는 전국민을 그 재능에 따라 適材適所에 배치하여,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罰을 주고 鄕黨에서도 물리쳐서 전국민이 모두 자기의 재능과 학식에 따라 적절한 일 자리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개 人品에는 高下가 있고 재주에는 長短點이 있다. 그 高下에 따라 短點을 버리고 長點만 쓴다면 천하에 전혀 못쓸 재주란 없을 것이다. 面에서 교육하는 데는 그 중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위로 올려 朝庭에서 쓰도록 하고, 자질이 둔하며 용렬한 자는 아래로 돌려 野에서 쓰도록 하며, 그 중 생각을 잘하고 솜씨가 재빠른 자는 工에 돌리고, 利에 밝고 財物을 좋아하는 자는 商에 돌리며, 꾀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자는 武職으로 돌리고, 소경은 점치는 데로, 宮刑당한 자는 문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앉은뱅이까지도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罰주고 鄕黨에서도 버려야 한다.」(63)

홍대용의 〈名分〉으로서의 社會身分制를 폐지하고 이를 〈職分〉으로서의 四民制度에 의하여 대체하려 한 사상은 그의 전국에 걸친 각급학교 설치에 의

(63) 『湛軒書』, 內集 補遺 卷 4, 「林下經綸」, 「凡人品有高下 材有長短 因其高下而舍短 而用長 則天下無全棄之才. 面中之教 其志高而才多者 升之於上 而用於朝 其質鈍而庸鄙者 歸之於下 而用於野 其巧思而敏手者 歸之於工 其通利好貨者 歸之於賈 問其好謀而有勇者 歸之於武. 瞽者以卜 宮者以閽 以至於暗聾跛躄 莫不各有所事. 其遊衣遊食 不事行業者 君長罰之 鄕黨棄之.」

한 人材敎育養成論과 人材適材適所配置論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구상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홍대용의 各級學校 설립론과 의무적 초등교육론, 그리고 인재교육양성론과 인재적재적소 배치론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서는 참으로 획기적이고 매우 진보적인 개혁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九. 맺 음 말

홍대용의 實學思想 중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그의 社會身分觀과 身分制度改革思想 및 그에 관련된 사회사상은 民族自主性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가의 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는 개혁하려는 그의 개혁사상과 직결되어 전개된 것이었다.

홍대용은 中國을 世界의 中心으로 보고 그 밖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朝鮮 포함)을 '오랑캐'로 간주하는 華夷思想을 그의 地球圓形說과 地球自轉說의 자연과학 사상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비판하고 분쇄하였다. 홍대용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民族들 사이의 均等, 君王들 사이의 均等, 國家들 사이의 均等, 文化(習俗)들 사이의 均等의 사상을 정립하고 주장하였다. 특히 홍대용이 中國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政治的 平等뿐만 아니라 習俗을 비롯한 文化的 平等까지 강조한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文化의 相對主義的 평등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홍대용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직접 朝鮮과 中國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는 당시 華夷思想이 지배하는 지적 분위기 속에서 이를 반대하고,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의 均等, 朝鮮國王과 中國皇帝(天子)의 均等, 조선 國家와 중국 국가의 均等, 조선의 習俗(文化)과 중국의 습속(문화)의 均等을 강조하여 朝鮮과 中國이 모든 부문에서 對等하고 均等함을 설파한 것이었다. 홍대용은 여기서 華夷思想을 철저히 극복하고 조선의 民族自主思想의 기초를 확고하게 정립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대용은 내부 개혁안으로서, 국토를 나누어 9道로 만들고 京都(서울)를 그 첫째로 삼으려 했으며, 道에는 책임자로 伯(직위는 正2品)을 두려고 하

였다. 한 道는 나누어 9郡으로 만들고 군에는 守(직위는 從3品)를 두기로 하였다. 한 郡은 나누어서 9縣으로 만들고 현에는 監(직위는 종5품)을 두기로 하였다. 한 縣은 나누어서 9司로 만들고 司에는 長(직위는 종7품)을 두기로 하였다. 한 司는 나누어서 9面으로 만들고 면에는 任(직위는 종9품)을 두기로 하였다. 통솔의 계통은 國王→道伯→郡守→縣監→司長→面任으로 하며, 그 권한은 국왕이 아니면 능히 任免을 할 수 없고, 道伯이 아니면 능히 治績評點을 내릴 수 없고, 郡守가 아니면 능히 賞罰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홍대용은 당시 私的 地主의 토지겸병에 의한 地主制度가 전국에 만연하여 총생산량의 切半을 地主가 농민(소작농)으로부터 賭租(소작료)로 수취하여 농민과 농촌이 궁핍해지는 것을 보고 〈土地改革〉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의 토지개혁 구상은 9道의 田畓을 〈井田制〉를 원리로 해서 均分하여, 부부가족 이상의 농민가족 1가구당 각각 2結씩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죽으면 3년 후에 그 토지를 그 후계자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井田制〉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均田制〉와 동일한 토지개혁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대용은 田園의 울타리 밑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도록 하며, 심지 않은 자에게는 벌로 布와 帛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홍대용은 당시 과중하게 시행되던 농민부담도 대폭 경감시켜 田稅를 총생산물의 10분의 1(什而取一)로 내려 개혁해서 통일하려고 하였다.

홍대용은 또한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해 나라와 백성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도 外侵의 위험을 망각하여 國防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國防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兵農一致制〉를 주장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軍事訓練을 받고 가을에는 군사훈련과 함께 兵術競合大會를 열어 우승자에 賞을 내리면서 군사를 장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군대조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서울에 10만, 9도에 각각 10만씩, 모두 100만명의 군대를 갖추어 언제나 外侵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兵農一致制를 그의 개혁안대로 실행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홍대용은 중앙정부의 조직도 개편하여, 9卿을 두는데, 각 卿의 산하에는

9郞이 있고, 각 郞에는 9佐가 있고, 각 佐에는 9吏가 있고, 각 吏에는 9隷를 두도록 하였다. 이밖에 급하지 않은 官職은 모두 혁파하고, 없앨 수 없는 것은 卿에 붙이도록 하였다. 종래 王室의 사치와 낭비에 재정을 대어주던 內需司와 宮房田(宮結)은 혁파하여 戶曹에 넣도록 하였다. 또한 홍대용은 중앙정부의 諫官制度도 폐지할 것을 제의하였다. 왜냐하면 諫言을 맡은 관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리와 일반 백성들의 諫言은 월권과 참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 홍대용은 公卿으로부터 農民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諫言과 所懷를 올릴 수 있는 제도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홍대용은 또한 전국에 걸친 각급 〈學校〉설립에 의하여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는 전국의 道에서 面까지 모두 각급학교를 설립하는데, 面에는 〈齋〉초등학교를 설립하여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모두 입학시켜서 교육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자는 뽑아 司의 중등학교에 보내어 교육하며, 여기에서 다시 우수한 자는 또 뽑아서 서울의 大學에 보내어 교육해서, 여기에서 가장 賢能하고 우수한 사람들은 조정에 推薦하여 官職을 주도록 제의하였다. 이것은 面의 초등학교에서는 전국민에 대하여 일종의 義務敎育을 실시하는 것이 되며, 우수한 人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두 敎育시키고 養成하여 나라에서 쓰는 교육제도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종래 官吏선발을 위해 두었던 科擧制度를 大學敎育에 의한 〈推薦制〉로 대체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人材의 長短을 헤아려 長點을 취해서 適材適所에 배치하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을 그 才能과 學識에 따라 士·農·工·商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모두 職業을 갖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士·農·工·商의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자들은 국가에서 罰주고 鄕黨에서도 물리쳐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대용은 이러한 다른 사회부문의 개혁사상과 직결시켜 그의 社會身分觀에 의거해서 社會身分改革思想을 제시하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社會身分制度〔兩班(士族)·中人·良人·賤人〕는 〈名分〉의 제도로, 四民制度(士·農·工·商)는 〈職分〉의 제도로 구분하여 보았다.

홍대용은 〈名分〉으로서의 社會身分制度는 兩班身分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분이 世襲되면서 아무리 빈궁해도 일하지 않으며 農·工·商과

같이 實業에 힘써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賤視해서 生産을 정체시키고 백성과 나라를 貧窮하게 만드는 害로운 제도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홍대용은 社會身分制度를 궁극적으로 廢止하고자 하여 우선 身分의 〈世襲制의 廢止〉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홍대용은 士·農·工·商의 四民制度는 「위와 아래가 힘을 다하여 그 職分을 닦는」 제도로서 實業과 生産을 발전시키는 사회의 필수적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홍대용은 社會身分制度를 폐지하고 이를 四民制度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그는 직분 배정의 기준을 〈身分〉이 아니라 〈才能과 學識〉에 두고,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라도 朝庭에 들어가 高位官僚가 되게 해야 하고,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비록 公卿의 자식이라도 당연히 下人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오직 홍대용의 이러한 사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四民의 〈平等〉을 주장하지 못하고 四民의 〈位階的 序列〉을 받아들였다는 곳에 있었다. 이 때문에 그의 四民制度觀은 완전한 社會的 分業으로 되지 못하고 〈士〉의 부분에서 當代에 限하여 士族身分과 신분제도가 남게 되는 결과를 갖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은 사회신분 중에서도 가장 폐해가 많은 것이 兩班身分이라고 보아 그 개혁을 구상하였다. 그 요점은 (1) 兩班身分의 世襲制의 폐지 (2) 無爲徒食하는 양반의 처벌과 淘汰 (3) 양반들의 虛學·詞章공부의 폐기와 實學공부의 장려 (4) 양반신분의 사치와 낭비의 금지 (5) 양반신분의 過飮과 무절제한 생활의 규제 (6) 양반신분의 학교 교육의 강화 (7) 鄕約의 권장 시행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또한 홍대용은 당시 성행하던 嫡庶差別에 대해서는 反對했으나, 그 廢止는 주장하지 못하고 同情을 보내면서 差別의 緩和를 주장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홍대용은 四民 중에서 그가 實學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農〉과 〈農民層〉에 대하여 여러가지 개혁을 구상하였다. 그 요점은 (1) 土地改革의 실시와 농민가족당 2結씩의 土地의 均等分配 실시 (2) 田稅의 총생산량의 10분의 1로의 대폭 輕減 (3) 농민층의 8세 이상의 자제들에 대한 의무교육

적 초등교육의 실시와 人材의 육성 발탁 (4) 농민층에게의 諫言과 所懷제출의 허용을 보장하는 제도의 설치 (5) 兵農一致制의 채택과 농민층에게의 군사훈련의 실시 (6) 농민들의 居住移轉의 許可制 실시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여기서 홍대용이 농민들의 거주이동에 官의 許可制를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土地에 緊縛시키는 봉건적 정책이 되는 것이었지만, 土地改革, 田稅의 대폭 경감, 농민층 자제들에 대한 의무교육적 학교교육의 실시와 인재의 육성 발탁 등은 농민층의 사회적 지위와 厚生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진보적 개혁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은 또한 당시 사회관습으로 엄금되어 있던 寡婦再嫁禁止制度에 대해서는, 과부재가를 「반드시 금지하지도 말고 또 반드시 권하지도 말고 당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寡婦再嫁放任論을 제의하였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억압적 조건 속에서, 홍대용의 이러한 사상은 과부재가를 사실상 許容해 주는 내용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진보적 성격을 가진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홍대용의 社會身分觀과 社會身分制度 改革思想은 사회신분제의 즉각적 폐지를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신분제의 골간인 신분의 世襲制의 廢止를 주장하고 實業에 종사하는 계층의 厚生과 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신분제를 해체하도록 추구한 사상으로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진보적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社會思想史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